

#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처벌 규정

(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)

## □ 벌칙 규정

위 반 내 용	처 벌 규 정	근 거
<b>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제한</b> - 감염목 등인 임목의 이동 -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(다만,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제외) - 감염목 등인 원목의 이동(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) -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의 이동 -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(다만,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 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·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 제외)	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	제17조 제1항
<b>역학조사 방해</b> -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·방해 또는 회피 <b>방제명령 불이행</b> -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 명령 -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, 소각, 파쇄 등의 조치명령 -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·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- 발생지역의 운반용구,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 조치명령	500만원 이하의 벌금	제17조 제2항
<b>소나무류의 이동제한</b>	500만원 이하의 벌금	제17조 제2항

위 반 내 용	처 벌 규 정	근 거
- 산림소유자 등은 감염목 등을 판매·이용할 수 없으며, 감염목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		
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-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	200만원 이하의 벌금	제17조 제3항

## □ 과태료 규정

### 과태료의 부과기준 (시행령 제6조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재선충병 방제대상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토지 출입 허용	법 제19조제1항 제1호	30	50	100
나. 산림소유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	법 제19조제1항 제1호	30	50	100
다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2항	해당 조림 비용 전액		
라. 산림청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조사·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	법 제19조제1항 제2호	50	100	150
마.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·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함	법 제19조제1항 제2호	50	100	200
바.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안 됨	법 제19조제1항 제2호	100	150	200
사. 산림청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·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,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	법 제19조제1항 제2호	50	100	150